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 추가 등〉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46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 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 추가 등	3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9
3.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게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운영·관리 실태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과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훈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4. 10.

다. 회부연월일 : 2026. 4.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불법촬영물등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그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조치 의무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내대리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8).

Ⅲ. 검토의견

1.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여야하는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 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 ----- ----- ----- ----- ----- ----- ----- -----

현행	개정안
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복제물 등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유통되어 부가통

신사업자 및 웹하드 운영자 등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가 그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²⁾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정보의 유통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해도가 매우 높아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영상·이미지 형태의 성착취물의 유통을 규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대화 및 텍스트 정보 등은 규제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착취물 제작 등 2차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현재 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어 규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영상, 이미지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는 대부분 텍스트(문자)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영상물 등의 정보 삭제·차단을 위한 것으로, 이를 텍스트 정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만약, 텍스트 정보에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기술 개발 및 그에

다른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조치의무사업자가 텍스트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AI 필터링 기술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인 대화나 일상적인 표현까지도 과도하게 필터링하거나 차단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이용자의 통신비밀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검토

-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정보로서 영상물을 대상으로 제도적 설계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중검토

-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구축, 배포 중인 공공 DNA DB는 영상물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고유값을 추출, 식별하도록 하고 있어 텍스트 형태의 정보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정보와의 비교·식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신중검토

-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국가(수사기관)가 영장을 통해 수행해야 할 통신 내용 모니터링 업무를 민간 사업자의 AI 알고리즘에 떠넘김에 따라 사기업을 형사사법 체계의 연장선으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인·권유라는 “텍스트·맥락” 기반의 내용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단순 편입시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 및 AI 검열의 기술적 한계를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임의적·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의 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 ----- -----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신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신설>	2. 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이 이용자의 검색결과에 송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

현행	개정안
<신설>	<u>게 추천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조치</u> 3. <u>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u>
<신설>	4. <u>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u>
<신설>	5. <u>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³⁾.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은 ① 불법촬영물등 의심 정보를 발견한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시 신고·삭제요청 할 수 있는 기능 마련, ② 이용자가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을 검색하려는 경우 이를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 ③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 시 유통방지 조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조치를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규정하고 있음⁴⁾.

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그런데, 현행법 제22조의5제2항에서는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어떠한 조치가 포함될 것인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현행법 제95조의2제1호의3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어떠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의 검색결과의 삭제 등 송출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 용자에게 추천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플랫폼의 추천 피드나 릴스, 숏폼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배포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이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동의

- 개정안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신중검토

- 개정안에 대해 의회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향후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시간 딥페이크나 텍스트 은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조치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기술 발전과 법률 시행 간 지체를 초래하여 법집행의 공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게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운영·관리 실태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과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에게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1항 제1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 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 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 다. <u><신 설></u>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 1.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 및 트래픽양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⁶⁾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① 이용자 보호 업무, ②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관련 자료 제출, ③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④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명령 이행의 업무를 대리하여야 함.

- 이에 따르면, 대규모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해당 사업자를 대신하여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제출명령을 대리·이행함으로써 국내에서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준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자료 제출 의무를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의 업무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외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에게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외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동의

-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225